

## <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>

- ◇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“입국시 PCR 음성확인서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◇ 또한, 3.7일 0시(한국시 기준)부터는 ‘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’되고,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‘PCR음성확인서’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.

### 1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기준

구분	기준
①검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(Antigen), AG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</li> </ul> </li> </ul>
② 검사 및 발급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예시) '22.1.22. 10:00시 출발 시 '22.1.20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</li> </ul> </li> </ul>
③필수기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</li> <li>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④검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검사 결과가 ‘음성’ 일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‘미결정’, ‘양성’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</li> </ul> </li> </ul>
⑤발급언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‘검사방법’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</li> </ul> </li> </ul>
⑥검사기관 (3.14일부터 삭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폴리란 우즈베키스탄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번동 가능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</li> <li>*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</li> <li>→ 3.14일 입국자부터 검사기관 관계없이 인정</li> </ul> </li> </ul>
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<http://overseas.mofa.go.kr>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2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예외 대상

-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
-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“대한민국 선원수첩” 소지자에 한함)
-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‘내국인’·‘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(212~)
-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(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)\*되고,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(본인 입증책임)(3.7~)
  - \* 항원검사 결과 ‘양성’인 경우는 인정 불가
- 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,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

### 3.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
- 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  - 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’은 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미달 포함)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- (입국 후)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,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 2일간 자가격리,
  - 외국인은 입국불허
- 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’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(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의 경우, 5일간 시설 + 2일 자가격리)